

대법원 2019. 4. 23 선고 2018다4719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9. 4. 23 선고 2018다47199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8. 10. 25 선고 2017나13844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A

피고, 상고인 B

판결 선고 2019. 4. 23.

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나13844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권순일

대법관이기택

주심대법관박정화

대법관김선수